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38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이언주·안도걸·문대림

이광희 • 민병덕 • 권향엽

허성무 · 오세희 · 조계원

박 정・신정훈・홍기원

소병훈 · 정진욱 · 김현정

이개호 · 황명선 의원

(17인)

제안이유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 탄소중립 및 에너지효율화 등 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로 산업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핵심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력산업의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등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도모하지않으면 향후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 년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 라. 정부는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력산업기업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제작·생산·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주력산업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주력산업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사.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력산업"이란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산업으로 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주력산업기업"이란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3.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란 국가가 주력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5. "임시허가"란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 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 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 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 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2. 주력산업의 연구개발, 인력 등 부문별 경쟁력 강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주력산업의 발전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4.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5. 주력산업의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6.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 간의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7. 주력산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8.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 지원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주력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 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주력산업발전위원회) ① 주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력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주력산업 관련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주력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 무원
 - 2. 주력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장 주력산업의 혁신기반 조성 등

- 제7조(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이하"혁신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청하려는 혁신클러스터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혁신클러스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클러스터에 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ㆍ기관들의 역량 강화
 - 2. 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 ·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

- 3. 혁신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 4. 혁신클러스터 지정 지역 외의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
- 5.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 6. 그 밖에 혁신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클러스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산업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주력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주력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력산업 관련 공공기관,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주력산업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력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실시 및 제4항에 따른 주력산업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제10조(주력산업기업의 재구조화 지원) 정부는 주력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 및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환경친화적 기술,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주력산업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정부는 주력산업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제작·생산·제공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력산업 인력의 확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주력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
 - 3. 퇴직근로자 등 주력산업 관련 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

- 4. 그 밖에 주력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3조(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주력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3.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그 밖에 주력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그 밖에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주력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주력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2. 주력산업 관련 기술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 3. 주력산업기업의 기술 관련 교육 컨설팅
 - 4.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 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주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 2. 주력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해외전시회 등의 개최·참가
 - 3. 주력산업 수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 4. 주력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②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주력산업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기업과 주력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주력산업기업 · 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자동화
 - 2. 주력산업기업 · 주력산업의 환경친화적 기업 · 산업으로의 전환
 - 3.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과의 융합 촉진 및 활성화
 - 4. 동반성장을 위한 주력산업기업 간 네트워크의 강화
 - 5. 주력산업기업 · 주력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주력산업기업과 협력업체 간 주력산업 관련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 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금융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수 있도록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융자 등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원) ① 국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의 세부 감면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 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처리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 · 기간 ·

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1. 사업실시계획서
- 2.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 ① 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한다.
-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 ①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 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 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알려야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 2. 제20조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20조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주력산업 관 련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 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 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 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 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제2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0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⑧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⑨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23조(임시허가) ①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 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

- 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사업실시계획서
- 2.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 3.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주력산 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 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 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 ①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 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맞는 기준 • 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규격 요건 등을 주력

산업 관련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27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2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에 대한 적 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 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 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

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2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는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
 - 2. 위원회
- 제30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제27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주력산업 관련 사업자는 그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

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 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력산업 전문인

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2. 제20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3.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주력산업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주력산업 관련 신제 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주력산업 관련 신 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운행 등을 한 자
- 6. 제3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